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4. 11. 3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10. 25. 홍길표 의원의 7인
- 나. 회부일자 : 1994. 10. 27.
- 다. 상정일자 : 제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94.11.3.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 : 홍길표 의원)

- 가. 제출이유
 -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317호)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등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, 현지 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한다(안 제2조 제1항)
 - 비용지급이 예외되는자는 마포구의회 의원,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받는 공무원(안 제3조제1호, 제2호)
 -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.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- 동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5

제3항의 규정에는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 비용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.

- 동개정조례(안)은 1991년 4월 29일 의회예규 제2호로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서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317호)제17조의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증인등의 불편함을 가급적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본 조례(안)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(안)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한바 관계과의 예산 편성요구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33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1994.10.25.
발 의 자 : 홍길표의원
의 7인

1. 개정이유

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317호)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에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등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, 현지 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한다(안 제2조 제1항)
- 비용지급이 예외되는자는 마포구의회의원,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받는 공무원(안 제3조제1호, 제2호)
-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 비용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. (안 제6조)

3. 제정근거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필 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(이하 "증인등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비용)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(철도, 선박, 항공 및 자동차), 현지 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조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마포구의회의원
2.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

제 4 조(비용의 지급기준)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.

제 5 조(비용지급일수의 계산)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,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 6 조(비용의 지급제한)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규정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4. 11. 2.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4. 10. 27. 마포구청장